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1.04.13 (수) 10:00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민병완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박문희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1년 4월 4일

나. 회부일자 : 2011년 4월 7일

3. 제안 이유

-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운용중인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나.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안 제5조, 안 제8~ 안 제10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현실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